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의 형성과 발전*

이 준 표**

《차 례》

- | | |
|-----------------------|-------------------------|
| I. 서 론 | III. 현행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적 규제 |
| II.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제정비 동향 | IV. 결 론: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I. 서 론

불안정한 국내 경제여건과 지속적인 실업률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 특히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개별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지역의 공통된 현상은 프랜차이즈 산업규모에 있어서 모두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비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프랜차이즈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며, 각국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국가인 베트남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아 메콩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GMS) 국가들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¹⁾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3146).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

베트남 프랜차이즈 산업은 2009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큰 폭의 성장 모멘텀을 맞이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국가경제의 발전과 외국인 투자확대로 인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프랜차이즈 시장 전반의 확대를 가져왔다. 베트남 기획투자부(2017)에 따르면,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총 21개 국가가 진출해 있으며, 164개 기업의 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존재한다. 2007년 기준 프랜차이즈 인허가 기업이 6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²⁾

현재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연평균 6-7% 수준의 빠른 경제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9,000만 이상의 인구, 젊은 층이 두터운 인구구조, 낮은 도시화율 등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 소득증가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은 베트남 소비시장의 주요한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³⁾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도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법제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기반인프라가 견고히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과 프랜차이즈 사업형태의 확산에 비하여 법적 인프라가 부실하며, 이행가능성 또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아가 해당 국가의 법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상 특단의 장애에 봉착하여 필요외적 비용 내지 기업역량의 소비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⁴⁾ 그럼에도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메콩경제권은 메콩강(Mekong River)을 공유하는 6개국(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포함하는 소지역(Subregion)으로서,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 의해 명명되었다(Jim Glassman, *Bounding the Mekong: The Asian Development Bank, China, and Thaila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p. 38). 동남아 메콩경제권의 인구는 1억 9천만 명(2019년)을 넘어섰으며, 경제규모도 7천억 달러(2017년)에 이른다. 평균 경제성장률은 6.18%(2018년)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신흥 성장지역 중 하나이다.

2) KOTRA, 『글로벌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전략(동남아시아·대양주)』, 2018, 137-138쪽.

3) KOTRA, 위의 책, 142쪽.

4) 2017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진출국의 정보, 진출방법, 물류공급체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진출을 위

관련 정책 및 법령들에 관한 조각 자료들은 존재하지만, 분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관련 다양한 규제와 제도적 관행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설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법제정비 동향과 현행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가 어떻게 형성·발전되어 가고 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현행 베트남 프랜차이즈 규제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상법 및 관련 시행령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법제정비 동향

1. 체제전환 이후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체제전환국가이다.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이 채택되면서 시장경제질서가 도입되었고, 이후 베트남 최초의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제정된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은 베트남 국회가 제정한 최초의 경제관계법이었으며, 당시 개도국에서 제정된 외국인투자법 중에서는 가장 개방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베트남의 경제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외국인투자법은 시장경제를 위한 베트남법 시스템을 개발시키고 개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⁵⁾

베트남 정부는 빠르게 떠오르는 사기업부문을 규율할 수 있는 기업법 도입도 추진하였다. 입법자들은 계약 및 재산법과 함께 기업법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법적 하부구조에 있어 핵심이 되는 법이라고 판단하였다.⁶⁾

한 사업계획서 작성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현지 법규의 이해’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 2017, 45쪽).

5) 권오승 외2,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49쪽.

6) John Gillespie, “Changing Concepts of Socialist Law in Vietnam”, *Asian Socialism & Legal*

베트남 국회는 1990년 베트남 최초의 현대 기업법을 채택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의 회사 개념과 같은 회사가 베트남 법제상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베트남이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처해 있었으며,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는 점에서 볼 때, 베트남 기업법의 도입은 매우 신속한 법적 대응조치였다고 평가된다. 이 법을 통하여 다양한 경제영역에 속하는 기업의 법적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경제주체도 다양화되었다.⁷⁾

베트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노력은 1992년 헌법에 의해 확인되었다.⁸⁾⁹⁾ 베트남 헌법(1992)상, 경제시스템에 관한 장(제2장)에 7개의 새로운 내용의 조문이 등장하였다.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한 것은 그 자체적으로 모순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적 현실 사이의 이념적 조화가 1992년 헌법 제1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개념이며,¹⁰⁾ 양자의 조화를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중간적 수단이 바로 “다부문 경제구조”라는 설정이었다.¹¹⁾

베트남 헌법(1992) 제15조는 베트남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제도에 따라 여러 구성원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인민의 소유, 집단 소유, 개인 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 중 전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전체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제관리를 하고,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은 각 경제 부문에서 시장경제질서 요소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¹²⁾ 이에 따라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는 국민생계를 위해 이로운 분야에 있어서 활동 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21조)”라고 하여 개인 활동의

Change: The Dynamics of Vietnamese and Chinese Reform, 2005, p. 54; 이준표,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의 법체계 및 기업법 동향”, 『의법논집』(제36권 제3호), 2012.8, 73쪽.

7) 한국법제연구원, 『아세안투자법령해설서 I』, 2012, 37-39쪽; 이준표, 위의 논문, 74쪽.

8) Nguyen Ba Binh, *Franchising Law and Practice in Vietnam*, Scholars' Press, 2014, p. 69.

9)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제3호), 2005, 248쪽.

10) 최은석,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 『통일문제연구』(18권 2호), 2006.11, 193쪽.

11) 김형완, “베트남 기업법상의 회사제도”, 『법학논문집』(제35집 제1호), 2011.4, 168쪽.

12) 김형완, 위의 논문, 168쪽.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합법적인 개인, 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제 23조)”라고 하여 다부문 경제 주체의 법적 안정을 확보해 놓았다.¹³⁾

베트남은 20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베트남이 지향하는 국가체제로 인정하였다. 도이머이 정책과 관련하여 법률체도의 정비를 통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강화하는 한편,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을 더욱 강화하였다. 즉,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양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성과를 토대로 정치와 사회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이룩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이념적 모델은 자본주의-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시장경제질서의 이분적인 국가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새로운 국가경제체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경제개방 개혁정책과 함께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조화,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⁴⁾

도이머이 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적·정치적·법적 개혁은 경제의 중요한 부문으로서 사적 경제부문의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으로 이끌었고, 이는 프랜차이즈 활동이 실제로 가능한 법적 환경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베트남의 가파른 경제성장은 베트남을 프랜차이즈를 위한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고숙련 노동력의 부족, 지식재산권 보호의 낮은 인식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고, 베트남의 오랜 역사와 독특한 문화 또한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켰다.¹⁵⁾

2. WTO 가입 전후

1992년 베트남 헌법은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세계 모든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를 확대할 것을 규정하였다. 1995년 베트남은 아세안의 후발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WTO에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WTO

13) 윤대규, “체제전환 국가의 기본법 원칙의 구현 및 집행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19권 1호), 2007.5, 19쪽.

14) 이효원, 앞의 논문, 246쪽.

15) Nguyen Ba Binh, op.cit, p. 70.

가입과정에서 베트남에게 부과된 의무는 법제개혁이었다. 법제개혁은 법률의 양과 질 모두의 개선을 의미했다. 당시 베트남의 많은 법률들과 하위규정들은 국제합의의 요구사항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특히, WTO 가입을 위한 전제적 요구사항으로 제시된 법적 현대화 작업은 베트남 법체계의 모습을 강력하게 변화시켰다.¹⁶⁾ WTO 가입은 베트남이 법체계를 투명하고,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었다. WTO 가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베트남은 25개의 법과 시행령을 제·개정했다. 이러한 법적 결과물로서, 베트남은 W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법제정비조건을 완수하였고, 2007년 WTO 회원국이 된 이래에도, 지속해서 법 규정을 정비하면서 WTO 가입 약속을 준수했다.¹⁷⁾

WTO 가입 등 국제기구의 가입을 위해 내·외국인 간의 법적 취급상 차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11월 29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투자법¹⁸⁾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과 1998년 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을 통합한 것으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었다. 외국계기업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자율화조치를 입법화하여 내국기업과의 불평등 부분을 상당히 해소하였으나, 여전히 내국인 투자자와 차별이 있으며 불분명하게 규정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⁹⁾

또한 2005년 개정 베트남기업법은 베트남이 시장경제법질서를 유지하고 현대적 기업제도를 도입·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표준적 기능을 담당하였다.²⁰⁾ 즉, 베트남기업법은 시장경제원리와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유기업을 회사제도로 전환하고,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일원으로서 선진 입법에서의 국제공통의 법 개념을 수용함은 물론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국제통일법적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이

16) John Gillespie, op.cit, p. 67.

17) 실제 많은 법과 시행령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시기 166개 법률, 70개의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1992년에는 헌법도 개정되었다(Nguyen Ba Binh, op.cit, p. 90).

18) Luật Đầu Tư, No. 59/2005/QH.

19) 권오승 외2, 앞의 책, 183쪽.

20) 이준표, 앞의 논문, 74쪽.

법은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먼저 도입하여 성공을 거둔 중국의 기업법을 상당 부분 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¹⁾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상거래 관련 법률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였다. 베트남은 2004년 경쟁법²²⁾ 제정을 시작으로, 2005년 민법, 상법, 지식재산법²³⁾, 투자법, 기업법 등을 제·개정하였다. 베트남은 2005년 상법 제정을 통해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을 입법화하였는데, 이는 베트남 프랜차이즈 발전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005년 상법 제정 이전에는 프랜차이즈가 단순한 경영기법으로 여겨졌으며, 기술이전법²⁴⁾²⁵⁾ 및 라이선스 규제, 독점판매권 규제 등의 다양한 법령에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모두 프랜차이즈 계약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²⁶⁾ 시장개방과 법제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체계 확립을 위한 시도들 또한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관리감독기구도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로 일원화되었다.

21)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37-39쪽; 이준표, 앞의 논문, 74쪽.

22) 베트남 경쟁법은 베트남 시장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력집중,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 경쟁, 경쟁 관련 법률 위반 행위의 처리 및 국가의 관리 기준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베트남 경쟁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lice Pham,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in Vietnam in the Face of Economic Reforms and Global Integration”,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26), 2006; 이준표,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수렴에 관한 연구: 법의 목적과 실제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법학』(58권), 2019를 참조할 것.

23)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베트남 지식재산법(IP Law)이 시행되었는데, 개정 민사법(Civil Code)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Law on Unfair Competition)과 함께 국제적인 관례 및 국제법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베트남 지식재산 법률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호법(1989), 저작권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4)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권을 가진 측이 기술을 이전 받는 측에게 기술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기술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베트남 기술이전법은 2017년 전면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베트남 기술이전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준표, “베트남의 기술이전법상 주요 내용”, 『최신의국법제정보』(2020년 제1호), 2020.3을 참조할 것.

25) 단독기술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기술이전은 당사자간 일반 계약의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투자프로젝트, 프랜차이즈 합의, 지식재산권의 이전, 기계·장치의 매매와 관련된 기술이전은 계약이나 약관, 계약서의 부록 또는 투자프로젝트 신청 서류의 형식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기술이전법 제5조 4항).

26) JETRO, 『模倣對策マニュアル-ベトナム編』, 2012, p. 183.

Ⅲ. 현행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적 규제

1. 베트남 현행 상법상 프랜차이즈 법체계

프랜차이즈는 특정한 분야에만 적용할 수 있는 영업방식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 또한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프랜차이즈는 상행위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상사관련 다양한 법률들이 프랜차이즈 계약 및 운영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업자(franchisor)와 가맹상(franchisee) 양 당사자 간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이루어진다.²⁷⁾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상행위와는 다르게 여러 복합적인 거래행위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상행위의 양 당사자간의 상호 밀접한 의존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법에 해당하는 상법만으로는 특수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²⁸⁾ 따라서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핵심 법제도로써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은 상법(Commercial Law, 2005)이다. 여기에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으로서 Decree 35(2006), Circular 09(2006), Decision 106(2008) 등이 존재한다.²⁹⁾ 상거래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상법은 2005년 제정되었는데, 제6편(Some Other Specific Commercial Activities) 제8장(Commercial Franchise)에 프랜차이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새로운 상거래 유형들에 적용 가능한 법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예로서 프랜차이즈를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다.³⁰⁾ 베트남 상법상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은

27) Imed Eddine Bekhouche, Soheyb Salah Kahlessenane, "An Overview of Franchising Law: Why is it Importan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Vol. 1, No. 1), 2018, p. 41.

28) 변명식 외2, 『프랜차이즈 경영론』, 두남, 2018, 255쪽.

29) 베트남의 법체계는 최상위법으로서의 헌법 아래에 Code, Ordinance, Resolution, Decision, Decree, Decision, Resolution, Circular 등으로 구성된다.

8개의 짧은 일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사관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상 최초로 프랜차이즈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관련 법체계의 근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³¹⁾ 베트남 상법 제4편 제8장은 프랜차이즈의 정의,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업자(franchisor)의 권리와 의무, 가맹상(franchisee)의 권리와 의무, 프랜차이즈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정을 준비할 당시, 베트남 무역부는 상법 프랜차이즈 규정에 대한 세부 지침에 해당하는 Decree, Circular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Decree 35³²⁾는 상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가맹업자(franchisor)의 가맹상(franchisee)에 대한 사전정보공개에 초점을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Circular 09³³⁾는 프랜차이즈 등록절차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으며, 특별히 정보공개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부록에서 제공하고 있다.³⁴⁾ 프랜차이즈 법적 규제의 핵심은 가맹업자(franchisor)와 가맹상(franchisee)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상법 및 일련의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수수료 문제 등 보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등록체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베트남 재무부가 2008년 Decision 106³⁵⁾을 공포하여,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30) Nguyen Ba Binh, op.cit, p. 197.

31) 업성필 외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성공 요인: 베트남 패스트푸드시장 진입사례”, 『프랜차이즈 경영연구』(2), 2011, 14쪽; Nguyen Ba Binh, op.cit, p. 201.

32) Decree 35/2006/ND-CP Making Detailed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ercial Law with Respect to Franchising Activities. 이 법령(Decree No.35/2006/ND-CP)은 2011년 Decree 120(Decree No.120/2011/ND-CP), 2018년 Decree 8(Decree No.08/2018/ND-CP)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

33) Circular 09 Providing Guidelines on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Franchising Activities. 이 법령은 2016년 Circular 04(Circular No. 04/2016/TT-BCT)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

34) Nguyen Ba Binh, op.cit, p. 203.

35) Decision 106 on the Levels and Regime for the Collection and Payment, Management and Use of Charges for Commercial Franchising Registration.

2. 베트남 현행 상법상 프랜차이즈 규제의 주요 내용

현행 베트남 프랜차이즈 규제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상법 및 관련 시행령 등을 기초로 하여, 프랜차이즈 정의, 법 적용범위, 국가 관리 조항, 프랜차이즈 자격 요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프랜차이즈 등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프랜차이즈 정의

베트남 상법 제284조는 프랜차이즈에 관하여, 가맹업자(franchisor)가 가맹상(franchisee)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스스로 상품 매매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하고 또한 요구하는 상업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맹업자(franchisor)란 영업권을 부여하는 상인을 말하며, 가맹상(franchisee)이란 영업권을 부여받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영업권’이라 함은, 가맹업자(franchisor)가 가맹상(franchisee)에게 가맹업자(franchisor)의 상표, 상호, 영업슬로건, 광고로고 등을 포함하여, 가맹업자(franchisor)의 사업시스템에 따라 가맹상(franchisee) 스스로 상품 매매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하고 또한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Decree³⁵ 제3조).

베트남 상법은 프랜차이즈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가맹업자(franchisor)가 합법적으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상법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의는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³⁶⁾

나. 법 적용범위

베트남 프랜차이즈 규제는 프랜차이즈에 관여하는 베트남 상인과 외국인 상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2009년 1월 1일부터 프랜차이즈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모든 제한은 WTO 양허안에 의거하여 폐지되었다. 베트남 프

36) 업성필 외1, 앞의 논문, 15쪽.

랜차이즈 법이 직접적으로 법의 선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하더라도, Decree 35 제11조의 프랜차이즈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베트남 법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where the parties choose to apply Vietnamese law)” 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할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사적 관계에 의한 것이다. 즉 법의 선택의 문제는 모법에 해당하는 민법(Civil Code, 2005)에 따라,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이 전체적으로 베트남에서 서명되고 이행된다면 베트남 법에 의해 규율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³⁷⁾

다. 국가관리 조항

베트남 프랜차이즈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의 통제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Decree 35 제4조는 프랜차이즈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프랜차이즈 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행사에 대한 책임부서로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대한 감독·통제·평가는 물론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문서의 제정 및 제안 등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 밖에 재무부는 프랜차이즈 활동에 적용 가능한 세금 체계의 가이드라인 및 프랜차이즈 등록비 등에 관한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다.

라. 프랜차이즈 자격 요건

Decree 35는 제5조에서 가맹업자(franchisor)의 자격 요건, 제6조에서 가맹상(franchisee)의 자격 요건, 제7조에서 프랜차이즈 영업에 허용되는 상품과 서비스 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상의 구체적인 프랜차이즈 규제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이 발표되었다. 2018년 1월 15일 발효된 Decree 8(2018)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분야에 있어서 기업에 부과되는 투자 조건이 일부 개정되었다. Decree 8(2018)은 기존의 Decree 35(2006) 규정 중 외국 프랜차이즈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조

37) 베트남 민법 제769조 참조

건을 완화하고(제5조), 가맹상(franchisee) 및 프랜차이즈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던 제한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제6조³⁸⁾, 제7조³⁹⁾). 즉, 가맹업자(franchisor)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대상 사업을 1년간 운영하고 이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프랜차이즈 관련 행정절차를 줄이고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⁰⁾

마.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가맹업자(franchisor)는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서 사본 및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franchise description document)를 희망 가맹상(franchisee)에게 제공해야 한다(Decree³⁵ 제8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franchise description document)에는 반드시 희망 가맹상(franchisee)에게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내용의 경고가 포함되어야 한다.⁴¹⁾

또한 가맹업자(franchisor)는 가맹상(franchisee)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가맹상(franchisee)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Decree³⁵ 제8.2조). 하위 프랜차이즈의 경우, 하위 가맹업자(franchisor)는 하위 가맹상(secondary franchisee)에게 프랜차이즈 설명서뿐만 아니라 마스터 가맹업자(master franchisor)의 상세 및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 마스터 프랜차이즈계약

38) 제6조(가맹상의 요건). 프랜차이즈 대상 분야 및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등록하는 자이어야 한다.

39) 제7조(프랜차이즈에 허용되는 상품과 서비스). 금지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한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증명서나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류가 발행되어야 한다.

40) 유상목,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의 변화”, Franchise World(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2018.4.20. [http://kfnews.kr/2018/04/20/a180420/(2020.6.1.방문)].

41) 해당 문서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내용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정보에는 ① 가맹업자(franchisor)와 프랜차이즈에 대한 일반정보, ② 상표 및 지식재산권, ③ 가맹상(franchisee) 초기비용, ④ 기타 재정적 의무, ⑤ 가맹상(franchisee)에 의한 초기 투자, ⑥ 가맹업자(franchisor)에 의해 계획된 비즈니스 시스템에 적합한 장비의 구매 내지 대여에 관한 가맹상(franchisee)의 의무, ⑦ 가맹업자(franchisor)의 의무, ⑧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설명, ⑨ 프랜차이즈 계약, ⑩ 프랜차이즈 시스템 정보, ⑪ 가맹업자(franchisor)의 재정상태, ⑫ 받게 되는 보상과 참여하는 조직 등이 있다(Decree³⁵ 제8조).

해지시 하위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정 방법에 관하여도 제공하여야 한다(Decree35 제8.3조). Decree 35는 가맹상(franchisee)의 공개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즉, 희망 가맹상(franchisee)은 가맹업자(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가맹업자(franchisor)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Decree35 제9조).

Circular 09는 가맹업자(franchisor)가 희망 가맹상(franchisee)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관할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정보공개서의 주된 내용을 정부에서 정하며, 이를 공개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업자(franchisor)의 일반 정보를 기재하는 A부분과 가맹업자(franchisor)와 가맹상(franchisee)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B부분으로 나뉜다. B부분과 관련하여, 가맹업자(franchisor)에 관한 사항으로는, 최근 1년간 가맹업자(franchisor)의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소송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권리양도인의 계약체결 전 의무, 활동과정 중 의무, 영업부지 선정과 관련된 의무, 교육의무 등을 기재한다. 가맹상(franchisee)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맹상(franchisee)이 지급해야 하는 초기 비용, 정기 가맹비 등 기타 각종 재정적 의무, 가맹상(franchisee)의 초기 투자 내용, 가맹상(franchisee)이 가맹업자(franchisor)로부터 매입하거나 빌려야 하는 제품, 설비 내역 등이 있다.

바. 프랜차이즈 등록

프랜차이즈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당국에 해당 계약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외국 가맹업자(franchisor)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당국에 프랜차이즈 운영을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프랜차이즈 운영 등록이라 함은 가맹업자(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획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로 이해될 수 있다. Decree35와 Circular09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운영 등록 신청 서류에는 산업무역부(MOIT) 지침에 따라 작성된 프랜차이즈 운영등록신청서, 산업무역부(MOIT)에서 규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된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소개서, 예

정된 가맹업자(franchisor)의 법적지위 및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부여된 지식재산권 보호 따른 서면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운영등록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문서가 외국어인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하여야 한다.⁴²⁾

외국 프랜차이즈에 대한 프랜차이즈의 등록 의무가 존속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산업무역부(MOIT)가 가맹업자(franchisor)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등록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지금까지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법제정비동향과 현행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가 어떻게 형성·발전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베트남은 한국과는 달리 프랜차이즈 거래만을 규율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통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프랜차이즈에 관한 독립된 통합법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다.⁴³⁾ 다만, 법의 형식을 떠나 건강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베트남의 경우, 프랜차이즈 규제들이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여타의 이웃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상법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또한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 등이 지속적으로 제·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프랜차이즈

42)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등록절차가 적용되지 않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및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지식재산법이나 기술이전법 등에 따라 관련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Baker McKenzie Ltd, *Forms of Doing Business in Vietnam 2019*, 2019, p. 27).

43) Andrew Terry,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hise Regulation in Asia", *Paper presented at the 16th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of Franchising*, 2002.

활동의 규제 수준이 완화되고 철폐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특유의 법치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한 법규의 분석만으로 베트남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도이머이 개혁이후, 법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분쟁의 감소, 예측가능성의 증가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부인할 수 없지만, 사법독립과 법적 이행력의 한계는 여전하다. 베트남이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하여, 먼저 투명하고 정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이른바 법제한류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법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법제 및 경쟁관련 법률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베트남 간 실질적인 프랜차이즈 법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정례화 등의 흐름 속에서 향후 베트남 배후에 있는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과의 관련 법제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오승, 김대인, 이상현,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김형완, “베트남 기업법상의 회사제도”, 『법학논문집』(제35집 제1호), 2011.4.
- 농림축산식품부, 『2017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 2017.
- 법제처, 『베트남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2008.
- 변명식, 서정석, 성백순, 『프랜차이즈 경영론』, 두남, 2018.
- 엄성필, 이동일,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성공 요인: 베트남 패스트푸드시장 진 입사례”, 『프랜차이즈 경영연구』(2), 2011.
- 유상목,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의 변화”, Franchise World(한국프랜차이즈산 업신문), 2018.4.20.
- 윤대규, “체제전환 국가의 기본법 원칙의 구현 및 집행에 관한 연구”, 『통일문 제연구』(19권 1호), 2007.5.
- 이준표,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의 법체계 및 기업입법 동향”, 『외법논집』 (제36권 제3호), 2012.8.
- 이준표,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수렴에 관한 연구: 법의 목적과 실제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법학』(58권), 2019.
- 이준표, “베트남의 기술이전법상 주요 내용”, 『최신외국법제정보』(2020년 제1 호), 2020.3.
-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제3호), 2005.
- 최은석,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 『통일문제연구』(18권 2호), 2006.11.
- 한국법제연구원, 『아세안투자법령해설서 I』, 2012.
- KOTRA, 『글로벌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전략(동남아시아·대양주)』, 2018.
- JETRO, 模倣對策マニュアル-ベトナム編, 2012.

- Alice Pham,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in Vietnam in the Face of Economic Reforms and Global Integration",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26), 2006.
- Andrew Terry,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hise Regulation in Asia", *Paper presented at the 16th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of Franchising*, 2002.
- Baker McKenzie Ltd, *Forms of Doing Business in Vietnam 2019*, 2019.
- Jim Glassman, *Bounding the Mekong: The Asian Development Bank, China, and Thaila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 John Gillespie, "Changing Concepts of Socialist Law in Vietnam", *Asian Socialism & Legal Change: The Dynamics of Vietnamese and Chinese Reform*, 2005.
- Imed Eddine Bekhouche, Soheyb Salah Kahlessenane, "An Overview of Franchising Law: Why is it Importan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Vol. 1, No. 1), 2018.
- Nguyen Ba Binh, *Franchising Law and Practice in Vietnam*, Scholars' Press, 2014.

<국문요약>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의 형성과 발전

이 준 표

본 연구는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법제정비동향과 현행 베트남 프랜차이즈 규제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에는 한국과 달리 프랜차이즈 거래만을 규율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통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프랜차이즈 활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상법상 구체적인 프랜차이즈 규제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이 발표되었다. 프랜차이즈 관련 행정절차를 줄이고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등록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산업무역부가 가맹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특유의 법치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한 법규의 분석만으로 베트남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도이머이 개혁이후, 법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분쟁의 감소, 예측가능성의 증가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부인할 수 없지만, 사법독립과 법적 이행력의 한계는 여전히 있다. 베트남이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하여, 먼저 투명하고 정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베트남, 프랜차이즈, 상법, 체제전환, 법제정비

<Abstrac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franchise related regulations in Vietnam

Lee, Joon-Py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 of Vietnam's franchise legislation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Vietnam franchise regulation. In Vietnam, unlike Korea, there is no franchise-related consolidation law. However, the basic law system centered on commercial law is well established. In addition, it not only continuously enacts and revises the enforcement ordinances or enforcement regulations, but also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develop the franchise industry by easing and eliminating regulations on franchis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since Vietnam still chooses to remain a socialistic country, there is a limit to understand the Vietnamese legal system by simply analyzing laws and regulations without understanding Vietnam's unique laws. In addition, after the reform of Doi-Moi, it is undeniable that positive changes, such as decrease in dispute and increase of predictability, can occu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but the limits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legal performance remain unsolved.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franchise industry that Vietnam expects, a transparent and accurat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must be established beforehand.

Key Words: Vietnam, Franchise, Commercial law, System transition, Legal reform

